



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(국제인권법연구회) 논의 보고 (대외비)

2016. 4. 7.

국제인권법연구회

1.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

가. 연구회 설립 경과

■ 2011. 10. 21. 창립총회

- 선출 : 회장 김○○, 간사 겸 학술총무 이○○, 문화총무 이○○, 소모임총무 이○○
- 2011. 8. ‘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’ 공지문상의 활동계획¹⁾
 -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
 -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·응답
 -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
 -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,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
- 초기 회원들 : 김○○, 김○○, 김○○, 김○○, 김○○, 김○○, 나○○, 류○○, 박○○, 사○○, 서○○, 송○○, 안○○, 유○○, 윤○○, 이○○, 이○○, 이○○, 이○○, 정○○, 차○○, 최○○, 홍○○, 황○○ 등

■ 2012. 11. 30. 총회

- 선출 : 회장 유임, 간사 유○○, 학술총무 김○○, 기획총무 김○○

■ 2013. 11. 22. 총회

- 선출 : 회장 김○○, 간사 김○○, 학술총무 안○○, 기획총무 신○○
- 주요 논의내용

1)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○○(임시간사) 공지



- 법관론, 사법부의 독립 등
- 2014. 1. 커뮤니티 밴드 개설 ⇨ 연구회 활성화

■ 2014. 11. 21. 총회

- 선출 : 회장 이○○, 간사 김○○
- 2014. 11. ‘인권편람’ 번역작업 완료 : 연구회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‘제4장 법관, 검사, 변호사의 독립과 공정성’

나. 소모임 관련

- 연구회 내 소모임은 ‘분과위원회’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, 회원 5명 이상이 모여 bottom-up 형식으로 구성됨
- 소모임 대표(분과위원장)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,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정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임

2.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(“인사모”)

가. 설립 경과²⁾

■ 2015. 7. 7. 박○○ 판사의 제안

■ 2015. 7. 21.자 첫 예비모임

- 이○○ 부장판사 등 12~14인 참석
- 선출 : 분과위원장(대표) 김○○, 총무 박○○, 김○○
- 주요 논의 내용 : 법관사회 내부의 소통, 사무분담, 상고법원 등

■ 2015. 8. 11.자 두 번째 예비모임

- 이○○ 부장판사 등 16인 참석
- 총무 2인 중 김○○ 부장판사가 빠지고 박○○ 판사가 제1총무로 선출됨
- 주요 논의 내용 : 상고법원

2) 설립과 활동은 모두 코트넷의 커뮤니티 공지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짐



- 가칭 ‘상고법원 끝장 토론회’ 로 모임 명칭 부여
- 이○○ 부장판사가 찬성론, 이○○ 부장판사가 반대론으로 각 기초발표 후 난상토론 ⇨ 결론을 내지는 않음

■ 정식 첫 모임에 앞선 회장 접촉

- 2015. 9. 9. 회장 주재 인사모 저녁식사 - 김○○(대표), 박○○(총무), 이○○(최연장자), 이○○
- 회장 발언 요지 : 인사모의 커뮤니티 外 활동 권유, 모임 결과 공지의 문제점 지적
 - 人事 등 사법제도 논의가 연구회 소모임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(소극)
 - 인사모 결과 내용, 특히 민감한 내용의 커뮤니티 내 게시가 적절한지 여부 (소극)
 - 법관으로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제도 개선을 꾀하자는 취지의 소모임인 ‘인사모’의 운영 개선 필요성 : 사법행정 책임자들의 제도 개선 및 소통의 노력
 -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체를 생각하여야 할 필요성의 강조 : 커뮤니티 지원의 증대, 국제인권 관련 해외 기관에의 파견, 국제인권 관련 회의 출장, 커뮤니티 내 인권자료실의 코트넷 상설화 등 연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
- 반응
 - 회장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고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함
 - 일단 공지 문제는 dry하게 간단히 결과만 공지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함

나. 정식 모임

■ 최근 활동

- 제1회 : 2015. 9. 14. ‘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’ (재판장과 배석의 관계) 중 업무적 측면 - 20여 명 참석, 새벽 2시 넘어 마쳤고, 김○○ 당시



고등부장, 이○○ 부장판사, 이○○ 판사 등이 뒤늦게 합류

- 제2회 : 2015. 10. 19. 위 주제 중 생활적 측면 - 15명 정도 참석
- 제3회 : 2015. 11. 13. '사실심 충실화' 1차 토론회
 - 발표 차○○ 판사, 지정토론 김○○, 이○○ 부장판사
 - 주제발표 : 독일의 재판제도와 그 운영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 재판 현실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
- 제4회 : 2015. 12. 11. '사실심 충실화' 2차 토론회
 - 발표 : 이○○ 부장판사, 박○○ 판사
 - 주제발표 : 시행 중의 각종 재판 모델의 소개 및 논의
- 제5회 : 2016. 1. 29. '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'
 - 2015. 12. 8.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설명한 처장님의 공지문 발표 이후 열림
 - 주요 내용 : ① 사법행정과 재판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이고, 사법행정권자와 법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, ②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가장 이상적 방안은 무엇인지, ③ 사법행정에 참여할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“선출” 방식은 무엇인지
- 제6회 : 2016. 2. 26. '사법행정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'
 - 송○○ 판사의 건의문에 이은 2016. 2. 19.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, 2016. 2. 25. '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' 제정에 대한 안내에 관한 차장님 공지문 발표 직후 열림
 - ⇨ 위원 추천권자가 고등법원장으로 한정된 점에 실망 표시
- 제7회 : 2016. 4. 8. 예정 '**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**'
 - 모임 공지문에서, 2015. 9. 2.자 처장님의 공지문 내용과 2016년 정기인사에서 이원화 제도에 균열이 생겼다는 취지의 한겨레 보도를 언급



- 법관 인사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천명

3. 이○○ 부장과의 대화

가. 경위

- 2016. 4. 3. 주말 회장에게 전화 ⇨ "제가 인사모를 책임져야 할 것 같다. 박○○이나 박○○등은 다른 업무로 바쁘고 김○○ 부장도 지방을 가서 책임자가 없다. 회장님을 만나 상의하고 싶다."
- 2016. 4. 7. 점심에 만남

나. 대화 내용

■ 이○○ 부장 : 개인적 생각일 뿐이라는 전제 하에 다음을 설명함

- 사적 대화 내용이므로 중략

■ 양형실장 : 자세한 의견 제시보다는 설득에 주력

- 사법행정운영자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하여 잘못은 아니겠지만, 이러한 의견은 내부에서 논의되고 소화되는 것이 맞고 그러한 논의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외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고 법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.
- 이 부장이 인사모를 책임진다는 것은 인사모가 연구회는 물론 법원에 미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인사모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외부로 나가지 않을 경우 대다수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. 그럼에도 인사모가 연구회 내에 잔존할 경우 인사모 활동이 곧 연구회 활동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.
- 행정처가 인사모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연구회 본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.
- 설령 젊은 법관들이 혁신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 부장은 타협과 조정의 중재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.



- 이 부장의 의견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자.

■ 이○○ 부장의 정리

- 사적 대화 내용이므로 중략

4. 결론

- 인사모가 연구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. 그러나 인사모가 연구회 내에 잔존하는 경우 커뮤니티 관리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
- 이○○ 부장의 발언 내용을 전부 믿을 수 없으나, 선을 넘지 않겠다거나 사전 상의를 하겠다는 약속, 행정처에 대한 건의사항의 전달, 인사모에 대한 우리법연구회의 영향력 행사에 관한 의견 등에 있어서 이 부장의 진심을 두어 차례 확인하였는바, 어느 정도 선의는 갖고 있다고 판단됨
- 추후, 인사모에 대한 공식적 경고 방안,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관리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

5. 기타

■ 2016. 4. 8. 인사모 관련

- 회장 이○○ / 간사 이○○, 김○○, 이○○, 김○○³⁾
- 참석 인원 10인 이하 - 역대 최저 수 참석
- 카톡방 개설되어 있음 - 28인

[끝]

3) ○○기, ○○지원 근무